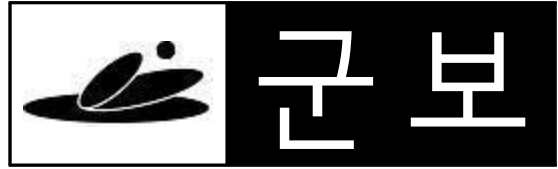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705호 2023. 5. 15.(월)

훈 령

- 예산군 훈령 제343호 : 예산군 정책특별보좌관 운영규정 2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23-118호 : 군관리계획(덕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5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23-836호 : 군계획시설(도로:예산읍 소로3-161호)사업 실시계획 인가 9
 및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예산군 공고 제2023-875호 :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1

입 법 예 고

- 예산군 공고 제2023-867호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32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3-868호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37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3-877호 :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7
 입법예고

회 람									
--------	--	--	--	--	--	--	--	--	--

발행 예 산 군 (편집 기획실 ☎ 339-7142)

예산군 정책특별보좌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예 산 군 수 최 재 구 인

2023년 5월 15일

예산군 훈령 제343호

예산군 정책특별보좌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정 주요 정책사안과 현안업무와 관련된 대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군 정책특별보좌관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예산군 정책특별보좌관(이하 “정책특별보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2. 군정 주요 정책의 입안, 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군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군정참여의 촉진과 의견 수렴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 정책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주요정책 분야
2. 특정현안 분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임기) 정책특별보좌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책특별보좌관이 사임,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정책특별보좌관의 자문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예산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정책특별보좌관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정책특별보좌관은 자문 및 그 밖의 자문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안이유

-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하여 군정 주요현안 및 복잡·다양해지는 정책수요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책특별보좌관의 기능을 규정함 (안 제2조)
- 나. 정책특별보좌관의 구성과 임기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제4조)
- 다. 수당과 자료제출 등 정책특별보좌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예산군 고시 제2023 - 118호

군관리계획(덕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일원에 위치한 덕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산림녹지과(☎ 041-339-762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등에게 보입니다.

2023. 5. 15.

예산군수

1. 공원위치

- 덕산공원 :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348-5번지

2. 공원면적

- 덕산공원 : 12,105m²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

- 대부분 20년 전 조성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주변 여건과 주민들의 이용행태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공간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임
- 기초성 노후된 공원의 선도적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녹지 여가공간 조성

4.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중앙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계		12,105	100.00%
시설부지면적	기 정	3,925	32.42%
	변 경	2,749	22.71%
녹지면적	기 정	8,180	67.58%
	변 경	9,356	77.29%

나. 세부시설 총괄표(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2,105		법 : 40%이하
시설면적	기정	3,925	32.42	
	변경	2,749	22.71	감)1,176
도로및광장	기정	696	5.75	
	변경	1,115	9.21	증)419
조경시설	기정	-	-	
	변경	-	-	
휴양시설	기정	1,421	11.74	
	변경	1,002	8.28	감)419
유희시설	기정	783	6.47	
	변경	-	-	감)783
운동시설	기정	766	6.32	
	변경	632	5.22	증)134
교양시설	기정	-	-	
	변경	-	-	
편익시설	기정	259	2.14	
	변경	-	-	감)259
녹지 및 기타	기정	8,180	67.57	
	변경	9,356	77.29	증)1,176

다. 세부시설 결정조서(변경)

구분	시설명	기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증감	건축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12,105	12,105	3,925	2,749	감)1,176	1	-	32	-	32	-	
도로및광장	소계		696	1,115	696	1,115	증)419	-	-	-	-	-	-	
	도로		696	1,115	696	1,115	증)419	-	-	-	-	-	-	
조경시설	소계		-	-	-	-	-	2	2	-	-	-	-	
	트램리스		-	-	-	-	-	2	2	-	-	-	-	
휴양시설	소계		1,421	1,002	1,421	1,002	감)419	26	21	-	-	-	-	
	웰빙공원	가	694	429	694	429	감)265	-	-	-	-	-	-	
	쌈지마당	나	595	486	595	486	감)109	-	-	-	-	-	-	
	정상쉼터	다	132	87	132	87	감)45	-	-	-	-	-	-	
	파고라	㉒	-	-	-	-	-	2	1	-	-	-	-	
	육각정자	㉓	-	-	-	-	-	1	2	-	-	-	-	
	조형파고라	㉔	-	-	-	-	-	2	-	-	-	-	-	
	휴게데크	㉕	-	-	-	-	-	2	-	-	-	-	-	
	벤치	㉖	-	-	-	-	-	16	9	-	-	-	-	
	앉음벽	㉗	-	-	-	-	-	2	2	-	-	-	-	
	목교	㉘	-	-	-	-	-	1	1	-	-	-	-	
	스윙벤치	㉙	-	-	-	-	-	-	4	-	-	-	-	
	PBDF막구조물	㉚	-	-	-	-	-	-	1	-	-	-	-	
	평상	㉛	-	-	-	-	-	-	1	-	-	-	-	
유희시설	소계		783	-	783	-	감)783	8	-	-	-	-	-	
	생태놀이터	라	783	-	783	-	감)783	-	-	-	-	-	-	
	조합놀이시설	㉜	-	-	-	-	-	1	-	-	-	-	-	
	시이소	㉝	-	-	-	-	-	2	-	-	-	-	-	
	흔들놀이시설	㉞	-	-	-	-	-	4	-	-	-	-	-	
동신놀이시설	㉟	-	-	-	-	-	1	-	-	-	-	-		
운동시설	소계		766	632	766	632	-	9	3	-	-	-	-	
	배드민턴장	마	626	632	626	632	증)6	-	-	-	-	-	-	
	체력단련장	바	140	-	140	-	감)140	-	-	-	-	-	-	
	체력단련시설	㊱	-	-	-	-	-	9	3	-	-	-	-	
교양시설	소계		-	-	-	-	-	1	-	-	-	-	-	
	환경조형물	㊲	-	-	-	-	-	1	-	-	-	-	-	
편익시설	소계		259	-	259	-	-	-	-	-	-	-	-	
	화장실	사	32	-	32	-	-	-	-	-	-	-	-	
	주차장	아	227	-	227	-	-	-	-	-	-	-	-	
관리시설	소계		-	-	-	-	-	1	-	-	-	-	-	
	창고	㊳	-	-	-	-	-	1	-	-	-	-	-	
녹지 및 기타			8,180	-	-	9,356	증)1,176	-	-	-	-	-	-	

라.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총계				296.2	696				
변경					485.5	1,115				증)419
기정	소계				102	232	진입로			
변경					135	314	진입로			증)82
기정	소로	3	진-1	4	24	115	진입로	남측진입부	웰빙공원	
변경	소로	3	진-1	4	47	198	진입로	남측진입부	웰빙공원	증)83
기정	소로	3	진-2	1.5	78	117	진입로	서측진입부	정상쉼터	
변경	소로	3	진-2	1.2	72	92	진입로	북서측진입부	정상쉼터	감)25
변경	소로	3	진-3	1.2	16	24	진입로	서측진입부	쌈지마당	신규
기정	소계				194.2	464	연결로			
변경					166.5	563	연결로			증)99
기정	소로	3	연-1	1.4~2.3	29.5	58	연결로	진입광장	꽃담산책정원	
변경	소로	3	연-1	2~3	28	67	연결로	진입광장	목교	
기정	소로	3	연-2	3	60	196	연결로	진입로1	정상쉼터	
변경	소로	3	연-2	2.5	56	170	연결로	진입로1	정상쉼터	
기정	소로	3	연-3	2	18	38	연결로	진입로1	체육공원	
변경	소로	3	연-3	1.2	2.5	3	연결로	연결로1	흔들놀이시설1	
기정	소로	3	연-4	2	55.6	112	연결로	진입로1	생태놀이터	
변경	소로	3	연-4	4	80	323	연결로	진입로1	산책로2	
기정	소로	3	연-5	3	4	12	연결로	진입로1	배드민턴장	
변경	소로	3	연-5							
기정	소로	3	연-6	1.5	12.5	19	연결로	주차장	연결로4	
변경	소로	3	연-6							
기정	소로	3	연-7	2	14.6	29	연결로	생태놀이터	진입로2	
변경	소로	3	연-7							
기정	소계									
변경					184	238	산책로			증)238
변경	소로	3	산-1	1.2	96	120	산책로	연결로1	진입로2	신규
변경	소로	3	산-2	1.2	88	118	산책로	진입로2	연결로2	신규

예산군 공고 제2023-836호**군계획시설(도로:예산읍 소로3-161호)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512-38번지 일원 군계획시설(도로 : 예산읍 소로3-161호)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15.

예 산 군 수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512-3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 사업(도로)
 다. 사업개요

도시명	사 업 명	위 치	사업의 종류	사업량	비고
예산읍	주교리 농공단지 도시계획도로(소3-161호) 개설공사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512-38 번지 일원	군계획시설 (도로 : 예산읍 소3-161호)	도로개설 L=211.0m, B=6.0m	

-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 성 명 : 예 산 군 수
- 마.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24. 12. 30.
 바. 열람기간 : 2023. 5. 15. ~ 2023. 5. 30.(14일간)
 사. 열람장소 : 예산군 도시건축과(041-339-770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
 자. 관계도서 : 생략(예산군 도시건축과에 비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예산군 예산읍)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주교	511-19	구	473	20		예산군				
2	주교	513-1	전	2,464	114	예산읍 마상길	김 * 린	농협	서울시 중구 통일로120	근저당권	
3	주교	512-22	전	641	105	예산읍 예산산업 단지로	김 * 길				
4	주교	512-6	전	628	34	예산읍 예산산업 단지로	김 * 길				
5	주교	512-9	전	766	87	예산읍 아리랑로 43 석탑아파트	이 * 돈 외 2인				
6	주교	512-18	대	504	71	예산읍 주교리	박옥섬				
7	주교	512-8	천	148	61		국 (국토교통부)				
8	주교	512-19	전	523	23	경기 안양 동안구 관악대로	이 * 자				
9	주교	504-5	천	142	69		충청남도				
10	주교	512-10	천	651	23	수원시 권선구 임북로 50.	임 * 영 외 2인				
11	주교	505-8	전	494	65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박 * 백				
12	주교	506-4	전	514	174	예산읍 예산산업단지안길	안 * 숙				
13	주교	506-5	전	331	108	예산읍 주교리	박 * 걸	상산양회 공업(주)	서울시 종로구 안사동 194-27	근저당권 지상권	
14	주교	505-5	대	793	23	예산읍 산성리	이 * 호				
15	주교	506-3	전	330	123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5-5 삼산타운	김 * 국				
16	주교	505-4	대	218	5	예산읍 주교리	정 * 천	예산 신협	예산읍 예산리 426-11	근저당권	
17	주교	506-2	전	295	110	예산읍 주교리	안 * 숙	예산 신협	예산읍 예산리 426-11	근저당권 지상권	
18	주교	505-3	대	339	3	예산읍 주교리	한 * 랑				
19	주교	505-14	대	17	2	예산읍 주교리	한 * 랑				
20	주교	506-6	전	67	67		국 (국토교통부)				
21	주교	505-13	전	19	3		국 (국토교통부)				
소 계					1,290						

예산군 공고 제2023-875호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5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군계획 조례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도시계획의 내실화를 기함

3. 주요내용

-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시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 30퍼센트 이하 완화(제48조제8항)

- 민간임대 및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유기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해당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제52조제3항)
-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시 해당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제52조제4항)
- 군계획위원회 현지조사 내용 신설(제61조1항)
-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신설(제63조의3)
-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제17조, 별표 1의2)
- 법령 조항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 및 불필요한 내용 정비

4. 입법예고기간 : 2023. 05. 15. ~ 2023. 6. 5. (21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예산군 건설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보내실 곳 : 도시건축과 스마트도시계획팀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우편번호 : 32435)
 - 전화 : 041)339-7702, 팩스 : 041)339-7759
 - 4)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도시건축과 스마트도시계획팀
 【☎(041)339-7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예산군 군계획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9조제5호 및 제6호”를 “제9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2조제5호 및 제6호 중 “미만인”을 각각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을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45조제16호,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제4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 제5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완화하는 용적률의 범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55조제2항 중 “영 제30조제2호”를 “영 제30조제1항2호”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회”로, “소집할”을 “소집하여 회의 할 수 있고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 할”로 한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

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63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6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공동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2.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중 영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건축물 위 설치시 지붕경계면에서 30cm 이내로 설치 하여야 하고 평지붕 위 설치시에는 옥상바닥에서 높이 3m이하, 설치경사각은 36도 이내, 최대높이의 1/3이상을 북측경계면에서 안쪽으로 이격(건축법 제86조 및 119조의 일조권 관련 법적기준 충족시 비적용)하여야 하며 경사지붕 위 설치시에는 발전시설과

지붕면 사이 높이 1m 이내로 지붕과 평행하게 설치(경사각 오차범위 5도이내) 하여야 한다

별표 7 제5호 중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을 “건축하는”으로 한다.

별표 8 제4호가목 및 나목 중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을 각각 “건축하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을 “건축하는”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을 각각 “건축하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을 “건축하는”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 중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을 “건축하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을 “건축하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중 “별표 20호”를 “별표 1 제20호”로 한다.

별표 12 제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를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별표 16 제12호(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을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으로 한다.

별표 17 제15호(1)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23 제7호(2)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접수·승인 받은 시설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危害)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p>	<p>제2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 ----- ----- 제9조제1 항제5호----- ----- -----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영 제57조제1항1호의2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한다.</p>	<p>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 ----- -----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5. ----- ----- ----- 이내 ----- ----- -----</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p>	<p>6. ----- -----</p>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8. (생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1. (생략)

제4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5. (생략)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7. (생략)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

이내

7.·8. (현행과 같음)

9.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

10.·11. (현행과 같음)

제45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1. ~ 15. (현행과 같음)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현행과 같음)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만,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21. (생략)

제48조(건폐율의 완화) ① ~ ⑥ (생략)

⑦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신설>

제5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8. (생략)

20.·21. (현행과 같음)

제48조(건폐율의 완화)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삭제>

<삭제>

⑧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제5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

1. ~ 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8조에 따라 성장관리방
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
트 이하로 한다.

20. · 21.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
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추
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
한다.

<신설>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 2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항제1
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
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
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
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
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완화하는 용적률의 범위는 제
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적률
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 영 제85조제1항
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을 최대한도의 범내에서 120퍼센트

제5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거나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신설>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이 내일 것.

제5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영 제30조
제1항2호-----

-----.

제6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 소
집하여 회의 할 수 있고 미리 현지
조사를 실시 할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3조의3(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63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6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공동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별표 1】개발행위허가기준

1. (생략)

【별표 1】개발행위허가기준

1. (현행과 같음)

2. 개발행위별검토사항

가 . 건축 물의 건축 또는 공작 물의 설치	<p>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 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1)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 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부지 면적이 2,000제곱미 터 미만(주택부지 경계 및 「도로 법」에 따른 도로 경계에서 100미 터 이상 이격하고 연접개발제한거 리를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 상으로 한다)이거나,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 (바) (생 략) (사)(신 설)</p> <p>2) ~ 3) (생 략)</p>
---	---

2. 개발행위별검토사항

가 . 건축 물의 건축 또는 공작 물의 설치	<p>----- ----- ----- -----</p> <p>1)----- ----- ----- ----- ----- ----- ----- ----- ----- ----- -----</p> <p>----- 는 제외 하고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의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p> <p>(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건축물 위 설치시 지붕경계 면에서 30cm 이내로 설치 하여야 하고 평지붕 위 설 치시에는 옥상바닥에서 높 이 3m이하, 설치경사각은 36도 이내이어야 하고 최 대높이의 1/3이상을 북측 경계면에서 안쪽으로 이격 (건축법 제86조 및 119조의 일조권관련 법적기준 충족시 비적용)하여야 하며, 경사 지붕 위 설치시에는 발전 시설과 지붕면 사이 높이 1m 이내로 지붕과 평행하 게 설치(경사각 오차범위 5 도이내) 하여야 한다.</p> <p>2) ~ 3) (현행과 같음)</p>
---	--

3. (생 략)

【별표 7】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4. (생 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6. ~ 15. (생 략)

【별표 8】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3. (생 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단, 다음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

Empty rectangular box

3. (현행과 같음)

【별표 7】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4. (생 략)

5. -----

----- 건축하는 -----

6. ~ 15. (현행과 같음)

【별표 8】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3. (현행과 같음)

----- 건축하는 -----

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
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건
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하는-----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
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
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
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
하는 것은 제외하며 건축물의 각 부
분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하는-----

6. ~ 14. (생략)

6. ~ 14. (현행과 같음)

【별표 9】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
는 건축물

【별표 9】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
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
박시설. 단, 다음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
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
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건
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하는-----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
하여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
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
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건

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하는

【별표 10】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단, 다음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하며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하는

4. ~ 5. (생략)

건축하는

4. ~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6. -----별표 1 제20호-----

7. ~ 11. (생략)

7. ~ 11. (현행과 같음)

【별표 12】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2】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

9. ~ 17. (생략)

9. ~ 17. (현행과 같음)

【별표 16】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6】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

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 (5) (생략)
- 13. ~ 23. (생략)

【별표 17】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7.(1) (생략)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7.(3) ~ 27. (생략)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 (1) ~ (5) (현행과 같음)
- 13. ~ 23. (현행과 같음)

【별표 17】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7.(1) (현행과 같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7.(3) ~ 27. (현행과 같음)

【별표 23】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7.(1) (생략)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8. ~ 21. (생략)

【별표 23】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7.(1) (현행과 같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

8. ~ 21. (현행과 같음)

예산군 공고 제2023 - 867호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섬김택시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민선8기 공약사항인 섬김택시 대상마을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 조건 완화(안 제2조)
 - (기존) 버스승강장까지 0.6km 이상 → (변경) 버스승강장까지 0.3km 이상
 - (기존)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 → (변경) 5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

4. 입법예고기간 : 2023. 05. 11. ~ 2023. 05. 31. (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예산군 건설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보내실 곳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우편번호 : 32435)
 - 전화 : 041)339-7692, 팩스 : 041)339-7659
- 4)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팩스제출 시 사전 전화통보 요망)
-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041)339-76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버스승강장까지 0.6km 이상 떨어지고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을 “버스승강장까지 0.3km 이상 떨어지고 5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이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서 버스승강장까지 <u>0.6km</u> 이상 떨어지고 <u>10가구</u> 이상 거주하는 마을로 하며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p> <p>3.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0.3km</u> ----- --- <u>5가구</u> ----- ----- ----- -.</p> <p>3. (현행과 같음)</p>

예산군 공고 제2023 - 868호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섬김택시 운영 대상마을을 기존 62개 마을에서 76개 마을로 확대·운영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섬김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확대(안 별표 1)

- 민선 8기 공약사항과 연계한 대상마을(62개⇒76개) 확대

○ 섬김택시 운행구간 및 지원금액 추가(안 별표 2)

- 14개 마을(예산 2, 대술 3, 신암 1, 덕산 4, 고덕 2, 신암 1, 오가1)

4. 입법예고기간 : 2023. 05. 11. ~ 2023. 05. 31. (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예산군 건설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우편번호 : 32435)

- 전화 : 041)339-7692, 팩스 : 041)339-7659

4)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팩스제출 시 사전 전화통보 요망)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041)339-76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 칙 명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예산군 규칙 제 호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 1 및 별지 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제2조 관련)

읍.면	마을명(자연마을)	읍.면	마을명(자연마을)
예산읍	향천리	응봉면	노화2리
	산성1리		후사리
	수철리(드리니골)		지석리
	증곡리		
삽교읍	이리	덕산면	둔2리
	상성1리		대동리
	성2리		낙상1리
	용동3리		낙상2리
	상하1리(초막골)		사랑2리
	상하2리		내라리
	두5리		옥계리
	안치리		둔1리
	신가1리(꽃산마을)	봉산면	고도리
	신가2리		구암리
	신가4리		옥전리
시산1리	시동리		
마전1리(삼바실)	효교2리		
시산2리(사쟁이)	화전1리		
대술면	화천2리	화전2리(고상골)	
	화산리(능미)	옹안리(안옹안)	
	화산리(곰우리)	마교리(진골)	
		고덕면	사1리
			사2리
	용3리		
	지곡리		
	구만3리		
	호음1리(독거노인공동체)		
신양면	무봉리	호음2리(공수골)	
	황계리	몽곡1리	
	서계양1리	상궁3리(하리부락)	
	서계양2리	신암면	탄중리
	차동리(불문리)		오산2리
	여래미리(고재고랑)		조곡1리
	하천리(산막)	용궁2리	
	여래미리(안곡)	예림2리(새마을취락)	
광시면	운산1리	오가면	신석1리
	운산2리		신원1리
	구례리		내량3리(독거노인쉼터)
	마사리		
	용두리		
대흥면	지곡리		
	송지대야리		
	탄방리		
	교촌1리		
	교촌2리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섬김택시 운행구간 및 지원금액(제3조 관련)

(단위: 원)

읍·면	마을명(자연마을)	출발지	도착지	기준요금	본인부담	군지원액	오지보상
계	76개 마을	456회		667,700	148,700	488,200	30,800
예산읍	향천리	만석골	쌍송배기	5,200	1,500	3,700	
	산성1리	마을회관	예산역	3,300	1,500	1,800	
	수철리(드리니골)	드리니골	신레원정류소	9,000	1,500	7,500	
삼교읍	이 리	외뜸말	삼교정류소	8,300	1,500	6,800	
	상성1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7,800	1,500	6,300	
	성2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6,800	1,500	5,300	
	용동3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4,800	1,500	3,300	
	상하1리(초막골)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4,800	1,500	3,300	
	상하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5,300	1,500	3,800	
	두5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4,800	1,500	3,300	
	안치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8,500	1,500	7,000	
	신가1리(꽃산마을)	꽃산마을	삼교정류소	3,300	1,500	1,800	
	신가2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3,600	1,500	2,100	
	신가4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7,300	1,500	5,800	
대술면	시산1리	전불	쌍송배기	6,500	1,900	4,600	
	마전1리(삼바실)	삼바실	쌍송배기	14,000	4,200	9,800	
	시산2리(사쟁이)	사쟁이	쌍송배기	6,800	2,000	4,800	
	화천2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9,100	2,700	6,400	
	화산리(능미)	능미	쌍송배기	13,000	3,900	9,100	
	화산리(곰우리)	곰우리	쌍송배기	13,000	3,900	9,100	
신양면	무봉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8,000	1,500	6,500	
	황계리	노인정	신양정류소	8,100	1,500	6,600	
	서계양1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6,700	1,500	5,200	
	서계양2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7,000	1,500	5,500	
	차동리(불문리)	불문리	신양정류소	10,000	1,500	8,500	
	여래미리(고재고랑)	고재고랑	신양정류소	9,000	1,500	7,500	
	하천리(산막)	산막	신양정류소	8,100	1,500	6,600	
	여래미리(안곡)	안곡	신양정류소	11,000	1,500	9,500	
광시면	운산1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700	1,500	6,200	
	운산2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000	1,500	5,500	
	구례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6,900	1,500	5,400	
	마사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8,000	1,500	6,500	
	용두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000	1,500	5,500	
대흥면	지곡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9,800	2,900	6,900	
	송지대야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14,600	4,300	10,300	
	탄방리	상탄방	쌍송배기	13,400	4,000	9,400	
	교촌1리	마을회관	예산역	16,700	5,000	11,700	
	교촌2리	마을회관	예산역	16,700	5,000	11,700	

읍·면	마을명(자연마을)	출발지	도착지	기준요금	본인부담	군지원액	오지보상
응봉면	노화2리	마을회관 위	응봉정류소	7,600	1,500	3,300	2,800
	후사리	안뒀절	예산역	11,000	3,300	7,700	
	지석리	원골, 고인돌	응봉정류소	8,000	1,500	3,700	2,800
	증곡리	마을회관	응봉정류소	6,800	1,500	2,500	2,800
덕산면	둔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0,000	1,500	8,500	
	대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3,600	1,500	12,100	
	낙상1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5,800	1,500	14,300	
	낙상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5,500	1,500	14,000	
	시량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7,000	1,500	5,500	
	내라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5,000	1,500	13,500	
	옥계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5,000	1,500	3,500	
	둔1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7,500	1,500	6,000	
봉산면	고도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9,800	1,500	5,500	2,800
	구암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300	1,500	4,000	2,800
	옥진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0,500	1,500	6,200	2,800
	시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9,800	1,500	5,500	2,800
	효교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6,000	1,500	4,500	
	화전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900	1,500	4,600	2,800
	화전2리(고상골)	고상골	고덕정류소	6,200	1,500	1,900	2,800
	용안리(안용안)	안용안	고덕정류소	9,300	1,500	5,000	2,800
	마교리(진골)	진골	고덕정류소	8,000	1,500	3,700	2,800
고덕면	사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500	4,300	
	사2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500	4,300	
	용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9,500	1,500	8,000	
	지곡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500	4,300	
	구만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7,700	1,500	6,200	
	호음1리 (독거노인공동체)	독거노인공동체	고덕정류소	10,500	1,500	9,000	
	호음2리(공수골)	공수골	고덕정류소	10,000	1,500	8,500	
	몽곡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6,800	1,500	5,300	
	상궁3리(하리부락)	하리부락	고덕정류소	10,500	1,500	9,000	
	신암면	탄중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7,800	2,300	5,500
오산2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9,000	2,700	6,300		
조곡1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10,500	3,100	7,400		
용궁2리	마을회관	신례원정류소	10,000	3,000	7,000		
	예림2리(새마을취락)	새마을취락	신례원정류소	11,000	3,300	7,700	
오가면	신석1리	마을회관	오가정류소	7,000	1,500	5,500	
	신원1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5,500	1,500	4,000	
	내량3리(독거노인쉼터)	독거노인쉼터	쌍송배기	14,000	4,200	9,800	

※ 산정기준

- 기준요금이란 해당 마을에서 세부 목적지까지의 통상 택시요금
- 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는 기준요금에서 버스기본요금 1,500원을 제외한 금액지원
- 예산읍 인근 읍면 마을에서 예산읍까지 운행하는 경우 기준요금의 100분의 30(십원단위 절삭)을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 지원
- 연장운행 등으로 택시요금이 기준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 부담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제2조 관련)				[별표 1]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제2조 관련)			
읍.면	마을명(자연부락)	읍.면	마을명(자연부락)	읍.면	마을명(자연부락)	읍.면	마을명(자연부락)
예산읍	향천리	응봉면	노화2리	예산읍	향천리	응봉면	노화2리
	<신설>		후사리		<삭제>		후사리
	<신설>		지석리		<삭제>		지석리
삽교읍	이리	덕산면	증곡리	삽교읍	이리	덕산면	증곡리
	상성1리		둔2리		상성1리		둔2리
	성2리		대동리		성2리		대동리
	용동3리		낙상1리		용동3리		낙상1리
	상하1리(초막골)		낙상2리		상하1리(초막골)		낙상2리
	상하2리		<신설>		상하2리		<신설>
	두5리		<신설>		두5리		<신설>
	안치리		<신설>		안치리		<신설>
	신가1리(꽃산마을)		<신설>		신가1리(꽃산마을)		<신설>
	신가2리		고도리		신가2리		고도리
대술면	시산1리	봉산면	구암리	대술면	시산1리	봉산면	구암리
	마전1리(삼바실)		옥전리		마전1리(삼바실)		옥전리
	시산2리(사쟁이)		시동리		시산2리(사쟁이)		시동리
	<신설>		효교2리		<신설>		효교2리
	<신설>		화전1리		<신설>		화전1리
	<신설>		화전2리(고상골)		<신설>		화전2리(고상골)
신양면	무봉리	고덕면	용안리(안용안)	신양면	무봉리	고덕면	마교리(진골)
	황계리		마교리(진골)		황계리		사1리
	서계양1리		사1리		서계양1리		사2리
	서계양2리		사2리		서계양2리		용3리
	차동리(불문리)		용3리		차동리(불문리)		지곡리
	여래미리(고재교량)		지곡리		여래미리(고재교량)		구만3리
	하천리(산막)		구만3리		하천리(산막)		호음1리 (독거노인공동체)
<신설>	호음1리 (독거노인공동체)	<신설>	호음2리(공수골)				
광시면	운산1리	신암면	호음2리(공수골)	광시면	운산1리	신암면	호음1리 (독거노인공동체)
	운산2리		<신설>		운산2리		<신설>
	구례리		탄중리		구례리		탄중리
	마사리		오산2리		마사리		오산2리
대흥면	용두리	오가면	조곡1리	대흥면	용두리	오가면	조곡1리
	지곡리		용궁2리		지곡리		용궁2리
	송지대야리		<신설>		송지대야리		<신설>
	탄방리		신석1리		탄방리		신석1리
	교통1리		신원1리		교통1리		신원1리
교촌2리	<신설>	교촌2리	<신설>				

[별표 2]

섬김택시 운행구간 및 지원금액
(제3조 관련)

(단위 : 원)

읍면	마을명 (자연부락)	출발지	도착지	기준 요금	본인 부담	군 지원액	오지 보상	
계	62개 마을	372회		592.50 0	117.20 0	384.50 0	30.80 0	
예산읍	향천리	만석골	쌍송배기	5,200	1,500	3,7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삼교읍	이 리	외뜸말	삼교정류소	8,300	1,500	6,800		
	상성1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7,800	1,500	6,300		
	성2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6,800	1,500	5,300		
	용동3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4,800	1,500	3,300		
	상하1리 (조막골)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4,800	1,500	3,300		
	상하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5,300	1,500	3,800		
	두5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4,800	1,500	3,300		
	안치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8,500	1,500	7,000		
	신가1리 (꽃산마을)	꽃산마을	삼교정류소	3,300	1,500	1,800		
	신가2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3,600	1,500	2,100		
	신가4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7,300	1,500	5,800		
	대송면	시산1리	전불	쌍송배기	6,500	1,900	4,600	
		마전1리 (삼박실)	삼박실	쌍송배기	14,000	4,200	9,800	
시산2리 (사쟁이)		사쟁이	쌍송배기	6,800	2,000	4,8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양면	무봉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8,000	1,500	6,500		
	황계리	노인정	신양정류소	8,100	1,500	6,600		
	서계1양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6,700	1,500	5,200		
	서계양2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7,000	1,500	5,500		
	차동리 (불문리)	불문리	신양정류소	10,000	1,500	8,500		
	여래미리 (고재고랑)	고재고랑	신양정류소	9,000	1,500	7,500		
	하천리 (산막)	산막	신양정류소	8,100	1,500	6,6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광시면	운산1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700	1,500	6,200		
	운산2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000	1,500	5,500		
	구례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6,900	1,500	5,400		
	마사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8,000	1,500	6,500		
	용두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000	1,500	5,500		
대흥면	지곡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9,800	2,900	6,900		
	송지대야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14,600	4,300	10,300		
	탄방리	상탄방	쌍송배기	13,400	4,000	9,400		
	교촌1리	마을회관	예산역	16,700	5,000	11,700		
	교촌2리	마을회관	예산역	16,700	5,000	11,700		
응봉면	노화2리	마을회관 위	응봉정류소	7,600	1,500	3,300	2,800	
	후사리	안딤절	예산역	11,000	3,300	7,700		

[별표 2]

섬김택시 운행구간 및 지원금액
(제3조 관련)

(단위 : 원)

읍면	마을명 (자연부락)	출발지	도착지	기준 요금	본인 부담	군 지원액	오지 보상	
계	76개 마을	456회		667.70 0	148.70 0	488.20 0	30.80 0	
예산읍	향천리	만석골	쌍송배기	5,200	1,500	3,700		
	상성1리	마을회관	예산역	3,300	1,500	1,800		
	주철리 (드리니관)	드리니골	신배민정류소	9,000	1,500	7,500		
삼교읍	이 리	외뜸말	삼교정류소	8,300	1,500	6,800		
	상성1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7,800	1,500	6,300		
	성2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6,800	1,500	5,300		
	용동3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4,800	1,500	3,300		
	상하1리 (조막골)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4,800	1,500	3,300		
	상하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5,300	1,500	3,800		
	두5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4,800	1,500	3,300		
	안치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8,500	1,500	7,000		
	신가1리 (꽃산마을)	꽃산마을	삼교정류소	3,300	1,500	1,800		
	신가2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3,600	1,500	2,100		
	신가4리	마을회관	삼교정류소	7,300	1,500	5,800		
	대송면	시산1리	전불	쌍송배기	6,500	1,900	4,600	
		마전1리 (삼박실)	삼박실	쌍송배기	14,000	4,200	9,800	
시산2리 (사쟁이)		사쟁이	쌍송배기	6,800	2,000	4,800		
화천2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9,100	2,700	6,400		
완산리 (눈미)		눈미	쌍송배기	13,000	3,900	9,100		
완산리 (문우리)		문우리	쌍송배기	13,000	3,900	9,100		
신양면	무봉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8,000	1,500	6,500		
	황계리	노인정	신양정류소	8,100	1,500	6,600		
	서계1양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6,700	1,500	5,200		
	서계양2리	마을회관	신양정류소	7,000	1,500	5,500		
	차동리 (불문리)	불문리	신양정류소	10,000	1,500	8,500		
	여래미리 (고재고랑)	고재고랑	신양정류소	9,000	1,500	7,500		
	하천리 (산막)	산막	신양정류소	8,100	1,500	6,600		
	여래미리 (안곡)	안곡	신양정류소	11,000	1,500	9,500		
광시면	운산1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700	1,500	6,200		
	운산2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000	1,500	5,500		
	구례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6,900	1,500	5,400		
	마사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8,000	1,500	6,500		
	용두리	마을회관	광시정류소	7,000	1,500	5,500		
대흥면	지곡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9,800	2,900	6,900		
	송지대야리	마을회관	쌍송배기	14,600	4,300	10,300		
	탄방리	상탄방	쌍송배기	13,400	4,000	9,400		
	교촌1리	마을회관	예산역	16,700	5,000	11,700		
	교촌2리	마을회관	예산역	16,700	5,000	11,700		
응봉면	노화2리	마을회관 위	응봉정류소	7,600	1,500	3,300	2,800	
	후사리	안딤절	예산역	11,000	3,300	7,700		

	지석리	원골 고인돌	응봉정류소	8,000	1,500	3,700	2,800
	중곡리	마을회관	응봉정류소	6,800	1,500	2,500	2,800
덕산면	둔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0,000	1,500	8,500	
	대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3,600	1,500	12,100	
	낙상1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5,800	1,500	14,300	
	낙상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5,500	1,500	14,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봉산면	고도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9,800	1,500	5,500	2,800
	구암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300	1,500	4,000	2,800
	옥전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0,500	1,500	6,200	2,800
	시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9,800	1,500	5,500	2,800
	효교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6,000	1,500	4,500	
	화전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900	1,500	4,600	2,800
	화전2리 (고상골)	고상골	고덕정류소	6,200	1,500	1,900	2,800
	옹안리 (민동안)	안옹안	고덕정류소	9,300	1,500	5,000	2,800
마교리 (진골)	진골	고덕정류소	8,000	1,500	3,700	2,800	
고덕면	사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500	4,300	
	사2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500	4,300	
	용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9,500	1,500	8,000	
	지곡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500	4,300	
	구만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7,700	1,500	6,200	
	호음1리 (독거노인 공동체)	독거노인 공동체	고덕정류소	10,500	1,500	9,000	
	호음2리 (공수골)	공수골	고덕정류소	10,000	1,500	8,5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산남면	탄중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7,800	2,300	5,500	
	오산2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9,000	2,700	6,300	
	조곡1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10,500	3,100	7,400	
	용궁2리	마을회관	산내원정류소	10,000	3,000	7,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오가면	신석1리	마을회관	오가정류소	7,000	1,500	5,500	
	신원1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5,500	1,500	4,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산정기준

- 기준요금이란 해당 마을에서 세부 목적지까지의 통상 택시요금
- 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는 기준요금에서 버스기본요금 1,500원을 제외한 금액 지원
- 예산을 인건 읍면 마을에서 예산읍까지 운행하는 경우 기준요금의 100분의 30(십원단 위 절삭)을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 지원
- 연장운행 등으로 택시요금이 기준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 부담

	지석리	원골 고인돌	응봉정류소	8,000	1,500	3,700	2,800
	중곡리	마을회관	응봉정류소	6,800	1,500	2,500	2,800
덕산면	둔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0,000	1,500	8,500	
	대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3,600	1,500	12,100	
	낙상1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5,800	1,500	14,300	
	낙상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5,500	1,500	14,000	
	시량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7,000	1,500	5,500	
	내리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5,000	1,500	13,500	
	옥계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5,000	1,500	3,500	
	둔1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7,500	1,500	6,000	
봉산면	고도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9,800	1,500	5,500	2,800
	구암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300	1,500	4,000	2,800
	옥전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10,500	1,500	6,200	2,800
	시동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9,800	1,500	5,500	2,800
	효교2리	마을회관	덕산정류소	6,000	1,500	4,500	
	화전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8,900	1,500	4,600	2,800
	화전2리 (고상골)	고상골	고덕정류소	6,200	1,500	1,900	2,800
	옹안리 (민동안)	안옹안	고덕정류소	9,300	1,500	5,000	2,800
마교리 (진골)	진골	고덕정류소	8,000	1,500	3,700	2,800	
고덕면	사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500	4,300	
	사2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500	4,300	
	용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9,500	1,500	8,000	
	지곡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5,800	1,500	4,300	
	구만3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7,700	1,500	6,200	
	호음1리 (독거노인 공동체)	독거노인 공동체	고덕정류소	10,500	1,500	9,000	
	호음2리 (공수골)	공수골	고덕정류소	10,000	1,500	8,500	
	몽곡1리	마을회관	고덕정류소	6,800	1,500	5,300	
	상곡3리 (하리부락)	하리부락	고덕정류소	10,500	1,500	9,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산남면	탄중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7,800	2,300	5,500	
	오산2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9,000	2,700	6,300	
	조곡1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10,500	3,100	7,400	
	용궁2리	마을회관	산내원정류소	10,000	3,000	7,000	
	예림2리 (사마을차량)	사마을차량	산내원정류소	11,000	3,300	7,700	
오가면	신석1리	마을회관	오가정류소	7,000	1,500	5,500	
	신원1리	마을회관	예산터미널	5,500	1,500	4,000	
	내량3리 (독거노인 차량)	독거노인 차량	쌍송배기	14,000	4,200	9,800	

※ 산정기준

- 기준요금이란 해당 마을에서 세부 목적지까지의 통상 택시요금
- 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는 기준요금에서 버스기본요금 1,500원을 제외한 금액 지원
- 예산을 인건 읍면 마을에서 예산읍까지 운행하는 경우 기준요금의 100분의 30(십원단 위 절삭)을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 지원
- 연장운행 등으로 택시요금이 기준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 부담

예산군 공고 제2023-877호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2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서면심의 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제시한 법체계 관련 일부 조문의 개정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 중 비차별 요소 추가(안 제4조제1호)

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당연직위원에 행정복지국장 추가 및 용어 정비(안 제18조제3항)

- (현 행)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 (개 정) 행정복지국장과 가족지원과장

다. 아동권리 옹호관 인원 추가(안 제32조2항)

- (현 행) 3명 → (개 정) 5명

라. 재량형 규정을 강제형으로 변경(안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 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22조의2 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4조)

4. 입법예고기간 : 2023. 5. 12. ~ 6. 2.(21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 (참조 : 예산군 가족지원과, 주소 :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가족지원과), 우편번호 : 32435)에게 서면이나 팩스(339-79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가족지원과 아동친화보육팀

【☎339-79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어떠한”을 “성별, 연령, 언어, 인종, 피부색, 종교, 정치적 의견 등 어떠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항”을 “모든 정책 및 활동”으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을 “아동 최상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홍보할 수 있다”를 “홍보해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해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분석·평가할 수 있다”를 “분석·평가해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해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을 “행정 복지국장과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5항 중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해야 한다”로 한다.

제24조 중 “둘 수 있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국·과장, 팀장, 실무자 등으로 임시 협의체를 둘 수 있다”를 “부서와 상시 협의한다”로 한다.

제31조 후단 중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제34조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기본원칙)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p> <p>1. 모든 아동은 <u>어떠한</u> 차별도 받지 않고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p> <p>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u>사항</u>을 결정할 때에는 <u>아동의 이익</u>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p> <p>3.·4. (생략)</p>	<p>제4조(기본원칙) ----- ----- -----.</p> <p>1. ----- <u>성별, 연령, 언어, 인종, 피부색, 종교, 정치적 의견 등 어떠한</u> -----.</p> <p>2. ----- <u>모든 정책 및 활동</u>--- <u>아동 최상의 이익</u>을 우선적-----.</p> <p>3.·4. (현행과 같음)</p>
<p>제11조(아동의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의 권리를 <u>홍보</u>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1조(아동의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 ----- ----- <u>홍보</u>해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u>시행</u>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추진</p>	<p>제12조(재정지원 등) ① ----- ----- ----- <u>시행</u>해야 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 ----- ----- -----</p>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3조(아동권리 모니터링)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아동 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생활전반 및 아동 관련 통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아동영향평가) ① 군수는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6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

----- 지원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아동권리 모니터링) ① -----

----- 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아동 실태조사) ① -----

----- 실시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아동영향평가) ① -----

----- 분석·평가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

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③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 8. (생략)

제22조의2(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등) ① ~ ④ (생략)

⑤ 실무추진단 회의는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아동참여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0조(아동위원회 회의) ① ~ ③ (생략)

④ 아동위원회와 유사한 타 위원회

----- 설치해야 한다.

제18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복지국장과 가족지원과장-----

1. ~ 8.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개최해야 한다.

제24조(아동참여위원회 설치) -----

----- 구성·운영해야 한다.

제30조(아동위원회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의 중복 정책 및 사업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관련 업무 담당 국·과장, 팀장, 실무자 등으로 임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⑤ (생략)

제31조(아동위원회 지원 등) 군수는 아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아동권리 옹호관 구성·운영)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옹호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옹호관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34조(아동권리 옹호관 활동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옹호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부서와
상시 협의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아동위원회 지원 등) -----

----- 해야 한다.

제32조(아동권리 옹호관 구성·운영)

① -----

-----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 5명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아동권리 옹호관 활동지원) --

----- 지원해야
한다.

【첨부 1】**관 계 법 령 발 취****■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첨부 2】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4. 작성자 : 가족지원과장